

교육청 정책 성명서

I. 추가적인 지원

본 통지문의 첨부 1 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질문에 관해 학부모/학생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목록이나, 이 목록에 있는 단체만 이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률 및 변호 서비스

귀하는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또는 변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 통지문의 첨부 2 는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무실과 기관들의 목록이나, 이 목록에 있는 기관들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권리 설명

다음은 공립학교 등록 자격이 있으며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장애 판별, 평가 및 배정과 관련된 권리를 설명한 개요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자녀교육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에 대한 결정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무료로 적절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a) 적절한 상황에서 가능한 귀하의 자녀가 최대한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
- (b) 귀하의 자녀가 비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비견할 만한 시설과 서비스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
- (c) 귀하의 자녀가 학교 및 학교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는데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권리;
- (d) 귀하의 자녀가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받았을 때,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립학교에서 배정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통학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통편을 제공받을 권리;
- (e) 필요하다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숙박시설 및 비의료적 관리를 포함한 기숙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받을 권리;
- (f)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업 외 특별활동에 참여할 동일한 기회를 가질 권리;
- (g) 자녀의 장애 판별, 평가 및 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
- (h) 무료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제공받기에 앞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받을 권리: (1)활용에 따른 특정 목표가 증명되었고 (2) 훈련을 받은 개인이 실행하며 (3)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분야를 집중 평가하도록 고안되어, 자녀의 적성이나 성취레벨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i)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부모님이 자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모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j) 귀하의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출처 및 정보를 기반으로 주의 깊게 고려하여 결정된 평가와 배정, 평가 날짜와 배정에 관한 선택사항들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
- (k) 귀하의 자녀에 대한 장애 판별, 평가 및 배정과 관련된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기록을 검토하는데 드는 비용이 귀하가 기록을 검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 내의 적절한 비용으로 모든 관련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l) 자녀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자녀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 기록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m) 귀하의 자녀에 대한 장애 판별, 평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정에 관해 공립학교에서 취한 결정이나 조치에 관련된 공정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시려면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Office of Impartial Hearings
131 Livingston Street, Room 201
Brooklyn, NY 11201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요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공정 심의 담당실(Office of Impartial Hearings)에 전화 (718) 935-328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 공정한 심의의 결과로 내려진 모든 상반되는 결정에 관한 검토(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o) 불만, 조정, 공정한 심의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 (p) 배정에 관련된 상당한 변화를 주기 전에(10 일 이상의 정학 포함) 학생의 배정에 관해 평가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q) 다양한 기타 연방, 주 및 시 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법 504 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편의 및/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를 갖고 있는 학부모 또한 (자녀의 장애여부에 관계 없이) 자녀 교육에 관련된 공립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